

광주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나73089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나7308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가단54853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형욱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천

변론종결 2024. 8. 28.

판결선고 2024. 9. 11.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가단54853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95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F조합 여신거래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2022. 2. 24.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22. 2. 28. 원고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대출과목: 일반대출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금액: 1,100,000,000원

대출개시일: 2022. 2. 28.

대출만기일: 2027. 2. 28.

대출이율: 변동금리, 최초 연 4.7%(기준금리 2.862%, 기한부예금 평균조달),

변동주기 6개월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3% 가산, 최고지연배상금율 연 20% 이내 대출상환방법: 거치기간 12개월, 거치기간 만료일부터 매1개월마다 원금을 해당 이자지급일에 균등분할상환

나. 피고는 2022. 2. 24. 원고와 C이 원고에 대하여 '일반대출금'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1,320,000,000원의 한도에서 근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대출금의 2023. 3. 6.부터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F조합 여신거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 4. 28.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한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49281호 대여금청구의 소에서 “C은 원고에게 1,145,375,980원 및 그 중 1,110,000,000원에 대하여 2023.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21. 12. 14.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2. 10. 27.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9.95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보증한도액인 1,3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보증계약이 주채무 확정 전에 해지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이 한정근보증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주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확정되기 전인 2022. 10. 27.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2593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원고로부터 대출금액, 상환방법, 이율,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출과목을 일반대출로 하여 11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대출약정일과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일반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한 사실, 원고와 C 사이의 여신거래는 이 사건 보증계약 당일 체결된 11억 원의 이 사건 대출금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증계약서에 보증의 형태가 한정근보증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계약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수진, 판사 이미주, 판사 김연경